

### 【 3 】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으로 하고, "각호와 같다"를 "각호와 같이 한다."로 하며, 동항1호중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비율을 "1천분의 10이상"에서 "1천분의 1"로 하고, 2호중 건축물의 건축비용 비율을 "1천분의 5이상"에서 "1천분의 5"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p>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u>각호와 같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 <u>건축비용의 1천분의 10이상</u></li> <li>2.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 : <u>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u></li> </ul>	<p>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u>각호와 같이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u>건축비용의 1천분의 1</u></li> <li>2. ----- : <u>건축비용의 1천분의 5</u></li> </ul>

##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제정 2003. 10. 19 조례 제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5. 위락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건축물과의 조화와 예술성을 갖추고 양주의 향토색을 살린 작품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 건축주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검사예정일 120일전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양주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검사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설치검사신청서를 접수받아 7일이내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계약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2.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미술장식의 사후관리) 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검사일까지 현장관리자 1인을 선임하고 설치검사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시장은 영 제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평가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양주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해당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2.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3.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체육담당관, 건축과장,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2인과 미술장식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및 보궐위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거주이전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
4.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 위촉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에 의한미술장식위원회와 동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거나 심의되어 설치중인 미술장식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